www.kw.ac.kr 창의・소통・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2026. 4.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Contents

광운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Ⅰ. 2027 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3

Ⅱ.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 4

Ⅲ. 전형별 모집인원 ····· 5

정원 내 모집인원 ····· 5

정원 외 모집인원 ····· 6

Ⅳ. 세부 전형별 안내 ····· 7

Ⅴ. 전형별 지원자격 ····· 8

수시모집 ····· 8

정시모집 ····· 11

Ⅵ. 전형 상세 안내 ····· 1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 및 면접평가 ····· 14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 14

체육특기자전형 경기실적평가 및 실기고사 ····· 15

Ⅶ.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16

Ⅷ.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17

Ⅸ.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 19

본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은 세부 계획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27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1.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 수시모집 선발 인원 : 945명(정원내 기준)

□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변경

전형명	2026학년도	2027학년도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262명 모집	250명 모집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	225명 모집	221명 모집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82명 모집	72명 모집

□ 지원자격 일부 변경

전형명	2026학년도	2027학년도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	2024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단, [특성화고, 일반고 및 종합고]의 일반계 이외 계열의 졸업(예정)자,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비인가)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및 직업교육위탁학생은 지원불가 ※ 고등학교별 추천자 명단을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추천 인원 제한 없음)	**2025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 고등학교에서 총 5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시설)에서 1개 학기 이상 재학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화고[일반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각종학교(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위탁학생 및 직업교육위탁학생 등)** **※ 학생부 교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거나 국내 일반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고등학교별 추천자 명단을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추천 인원 제한 없음)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축구] 아래 '가'와 '나' 두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고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대회 8강 이상 진출팀에 소속된 자 (단, 8강 이상 진출 단일 대회 소속팀 경기시간의 70% 이상 출전한 자) (중략) 나. 고교 재학 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등리그에서 소속팀 경기시간 70% 이상 출전한 자	[축구] 아래 '가'와 '나' 두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고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대회 8강 이상 진출팀에 소속된 자 (단, 8강 이상 진출 단일 대회 소속팀 경기시간의 **50%** 이상 출전한 자) (중략) 나. 고교 재학 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등리그에서 소속팀 경기시간 **50%** 이상 출전한 자

2. 정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 정시모집 선발 인원 : 779명(정원내 기준)

□ 수능-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일부 변경

구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일괄합산 전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1단계 : 수능 60, + 학생부 40 (10배수) 2단계 : 1단계 70 + 실기 30	**수능 40% + 학생부 30% + 실기 30%**

Ⅱ.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전공
인제니움대학	자연/인문	자율전공학부(자연/인문)	**403**	
전자정보공과대학	자연	전자공학과[*]	**83**	
		전자통신공학과[*]	**48**	
		전자융합공학과[*]	**42**	
		전기공학과[*]	**43**	
		전자재료공학과[*]	**43**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58**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60**	지능컴퓨팅시스템전공, 지능정보전공
		소프트웨어학부[*]	**60**	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전공
		정보융합학부	**60**	비주얼테크놀로지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로봇학부 AI로봇전공[*]	**74**	AI로봇전공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31**	
		건축공학과[*]	**26**	
		화학공학과[*]	**50**	
		환경공학과[*]	**25**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32**	
		전자바이오물리학과	**35**	
		화학과	**38**	
		스포츠융합과학과	**37**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25**	
		영어산업학과	**2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50**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전공, 인터랙티브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산업심리학과	**31**	
		동북아문화산업학부	**41**	문화교류전공, 문화콘텐츠개발전공
정책법학대학		행정학과	**34**	
		법학부	**70**	일반법학전공, 기업법무전공, 과학기술법무전공
		국제학부	**25**	국제지역전공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91**	경영학전공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40**	빅데이터경영전공
		국제통상학부	**39**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국제금융전공
참빛인재대학	인문	금융부동산법무학과	**1**	
	자연	게임콘텐츠학과	**1**	
		스마트전기전자학과[***]	-	
	예체능	스포츠상담재활학과[***]	-	
총 계			**1,724**	

[*] 해당 모집단위(학과)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로서, 소속 신입생은 공학프로그램(공학교육인증제도)에 전원 배정됨

[***] 해당 모집단위(학과)는 정원 외 전담학과임

Ⅲ. 전형별 모집인원

1. 정원 내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총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	소계	수능							소계	
											일반학생전형				기회균형전형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지역균형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일반학생			스포츠융합과학과					
											가	나	다	다	가	나	다		
인제니움대학	자연/인문	자율전공학부(자연)								0			257					257	257
		자율전공학부(인문)								0			146					146	146
전자정보공과대학	자연	전자공학과	18	13			16	13		60	18				5			23	83
		전자통신공학과	14	8			9	9		40	5				3			8	48
		전자융합공학과	10	8			8	8		34	5				3			8	42
		전기공학과	10	8			9	8		35	5				3			8	43
		전자재료공학과	12	8			8	8		36	5				2			7	43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14	8			6	6		34	20				4			24	58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12	20		8	8		48	8				4			12	60
		소프트웨어학부		12	18		9	9		48	8				4			12	60
		정보융합학부		12	18		9	8		47	9				4			13	60
		로봇학부 AI로봇전공		12	16		8	8		44	26				4			30	74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6	3			4	4		17	12				2			14	31
		건축공학과	6	4			4	4		18	6				2			8	26
		화학공학과	12	10			9	7		38	9				3			12	50
		환경공학과	6	3			4	4		17	6				2			8	25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	5			5	5		23	7				2			9	32
		전자바이오물리학과	8	7			6	5		26	7				2			9	35
		화학과	10	6			6	6		28	8				2			10	38
		스포츠융합과학과							15	15				22				22	37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6	4			3	4		17		6				2		8	25
		영어산업학과	6	4			4	4		18		8				2		10	2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2	9			8	8		37		10				3		13	50
		산업심리학과	8	4			5	4		21		8				2		10	31
		동북아문화산업학부	10	6			7	6		29		10				2		12	41
정책법학대학		행정학과	8	6			5	5		24		8				2		10	34
		법학부	16	14			12	10		52		14				4		18	70
		국제학부	6	3			4	4		17		6				2		8	25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4	20			12	12		68		18				5		23	91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10	6			4	4		24		14				2		16	40
		국제통상학부	10	6			6	6		28		9				2		11	39
참빛인재대학	인문	금융부동산법무학과				1				1								0	1
	자연	게임콘텐츠학과				1				1								0	1
		스마트전기전자학과								0								0	0
	예체능	스포츠상담재활학과								0								0	0
총계			250	221	72	2	198	187	15	945	164	111	403	22	51	28	0	779	1,724

2. 정원 외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생부종합				기타	수능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서해5도 출신자전형	재외국민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전자정보공과대학	자연	전자공학과	6	5		3	5	이월인원	이월인원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4	3			3	이월인원	이월인원	
		전자재료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5	5			7	이월인원	이월인원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	3					이월인원		
		로봇학부 AI로봇전공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2				3	이월인원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2	3				이월인원	이월인원	
		환경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3				3	이월인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화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	1				1	이월인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1			3	4	이월인원		
		영어산업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	2				이월인원	이월인원	
		산업심리학과	2					이월인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2					이월인원	
정책법학대학		행정학과	1				3	이월인원		
		법학부	2					이월인원		
		국제학부	1					이월인원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3	3			4	이월인원	이월인원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국제통상학부	1	2				이월인원	이월인원	
참빛인재대학	인문	금융부동산법무학과			30					이월인원
	자연	게임콘텐츠학과			30					이월인원
		스마트전기전자학과			30					이월인원
	예체능	스포츠상담재활학과			30					이월인원
총계			**39**	**25**	**120**	**6**	**33**	**이월인원**	**이월인원**	**이월인원**

※ 위 사항은 학생 정원 조정 계획에 의거 모집단위의 통합, 분리, 명칭변경 및 정원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시모집 수능【농어촌학생전형】과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 해당 전형 미충원 결원 발생 시 정시모집에서 수능【일반학생전형】 해당 학과별 모집군에 따라 가, 나군에 배정하여 모집함
※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정원내·외】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결원 발생 시 정시 다군에서 모집함
※ 재외국민전형에서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함

IV. 세부 전형별 안내

모집 시기	전형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정원 내	정원 외		
수시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250		• 1단계 : 서류종합평가 100%(3.5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평가 40%	없음
		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	221		• 서류종합평가 100%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72		• 1단계 : 서류종합평가 100%(3.5배수) • 2단계 : 1단계 성적 60% + 면접평가 40%	
		농어촌학생전형		39	• 서류종합평가 100%	
		특성화고졸업자전형		25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정원내·외	2	120		
		서해5도출신자전형		6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198		• 학생부(교과) 100%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187		• 논술고사 80%, 학생부 20%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15		• 경기실적 60% + 실기 30% + 학생부 10%(교과 7%, 출결 3%)	
	기타	재외국민전형		33	• 면접고사 100%	
	수시모집 소계		**945**	**223**		
정시	수능	일반학생전형	678		• 수능 100%	없음
		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22		• 수능 40% + 학생부 30% + 실기고사 30%	
		기회균형전형	79		• 수능 100%	
		농어촌학생전형		이월인원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이월인원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정원내·외	이월인원	이월인원	• 서류종합평가 100%	
	정시모집 소계		**779**	**-**		
총계			**1,724**	**223**		

※ 정시모집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결원 발생 시에만 모집함
※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Ⅴ. 전형별 지원자격

1. 수시모집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전형 Ⅰ-면접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국내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경우 지원 불가
학생부종합 【광운참빛인재전형 Ⅱ-서류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고등학교 3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재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단위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국내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경우 지원 불가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 정원 외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 또는 '유형 2'에 해당하는 자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유형 1(중·고등학교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학교(1~3학년) 과정 중 2개 이상의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중학교(1~3학년)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학생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중학교(1~3학년)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 또는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유형 2(초·중·고등학교 12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업자 전형】 ※ 정원 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가.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나.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정원 내·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본교 **입학일(3월1일)** 기준으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라)「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자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학생부종합 【서해5도출신자 전형】 ※ 정원 외	서해 5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 또는 '유형 2'에 해당하는 자 ※ 서해 5도 :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유형 1(중·고등학교 6년)]** 서해 5도에서「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초·중·고등학교 12년)]**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2025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내 고등학교에서 총 5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시설)에서 1개 학기 이상 재학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화고[일반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각종학교(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위탁학생 및 직업교육위탁학생 등) ※ 학생부 교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거나 국내 일반고등학교 성적체계와 다른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고등학교별 추천자 명단을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추천 인원 제한 없음)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명	지원자격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공통]**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종목별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자 ※ 검정고시, 외국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축구]** 아래 '가'와 '나' 두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고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대회 8강 이상 진출팀에 소속된 자 (단, 8강 이상 진출 단일 대회 소속팀 경기 시간의 50% 이상 출전한 자) ※ 인정대회 -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 -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무학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백록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청룡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 전국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겸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 고교 리그 왕중왕전 실적은 전국규모대회 경기실적에 반영, 고교 리그대회 실적에서는 제외함 - 전국체육대회 -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 기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또는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주최 전국 규모 대회 나. 고교 재학 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등리그에서 소속팀 경기시간 50% 이상 출전한 자 **[아이스하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대회 8강 이상 진출한 고교 팀에 소속된 자 ※ 인정대회 - 고교 아이스하키 1차 리그 - 고교 아이스하키 2차 리그 - 고교 아이스하키 3차 리그 - 전국춘계중고연맹전 - 전국추계중고연맹전 나. 국제규모대회 선수로 출전한 자 (국가대표, U-18대표)
기타 【재외국민전형】 ※ 정원 외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 재외국민(정원의 2%이내) '국외근무자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에서 재직/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의 각각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전교육과정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2. 정시모집

전형명	지원자격
수능 【일반학생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 【일반학생전형 -스포츠융합과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 【기회균형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에 한함 **[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 또는 '유형 2'에 해당하는 자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유형 1(중·고등학교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학교(1~3학년) 과정 중 2개 이상의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중학교(1~3학년)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학생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중학교(1~3학년)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 또는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유형 2(초·중·고등학교 12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전형명	지원자격
	[특성화고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가.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나.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자립지원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정위탁보호 중인 자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자 다.「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 정원 외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 또는 '유형 2'에 해당하는 자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유형 1(중·고등학교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학교(1~3학년) 과정 중 2개 이상의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중학교(1~3학년)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학생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중학교(1~3학년)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 또는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유형 2(초·중·고등학교 12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곳으로 변경된 경우 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함(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전형명	지원자격
수능 【특성화고졸업자 전형】 ※ 정원 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가.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나.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 정원 내·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본교 **입학일(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자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VI. 전형 상세 안내

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종합평가 및 면접평가

[서류종합평가]

□ 대상전형 : 학생부종합【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학생부종합【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업자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학생부종합【서해5도출신자전형】

□ 평가방법

- ○각 평가조별 다수(2~3인)의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개별 독립평가
- ○지원자의 평가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종합적 정성평가
  -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본교양식)」 활용
- ○평가 시 전형자료에 기재된 지원자 인적사항, 학교명 등 블라인드 처리
- ○학교폭력 대상자 및 조치사항은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며 정성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면접평가]

□ 대상전형 :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 평가방법

- ○각 평가조별 2인의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지원자에 대하여 개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 (면접 소요시간 10분 이내)
- ○지원자의 평가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 구성된 개인 적합 질문을 통한 종합평가(문제 제시형 평가 없음)
- ○평가 시 전형자료에 기재된 지원자 인적사항, 학교명 등 블라인드 처리
-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

※ 블라인드 면접에 저해되는 언행(성명/수험번호/출신고교/부모직업 등 언급)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 대상전형 : 논술【논술우수자전형】

□ 논술고사 안내

계열	내용	시험시간
자연	▸ 수리 논술(2문제) ▸ 각 문제당 5개 내외의 소문제 출제 ▸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용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한 제시문과 함께 출제	120분
인문	▸ 통합교과형 논술(2문제) ▸ 각 문제당 750자 내외 ▸ 복수의 제시문을 상호 관련시켜 통합형으로 출제	

3. 체육특기자전형 경기실적 평가 및 실기고사

□ 대상전형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 경기실적 평가

종목	내용
축구	• 전국규모 대회 단체 성적 • 고교 리그 대회(챌린지리그 포함) 단체성적
아이스하키	• 대표팀 선발 기록 • 개인성적 : 개인 포지션별 포인트 점수 합산 • 단체성적 : 단체대회 성적별 점수 부여

□ 실기고사

종목	내용
축구	• 경기력테스트(미니게임)
아이스하키	• 경기력테스트(미니게임)

4. 수능-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전형방법 및 실기고사

구분	내용
전형방법	• 일괄합산 전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수능 40% + 학생부 30% + 실기 30%
실기고사 종목	• 제자리 멀리뛰기 • 사이드스텝 • 윗몸일으키기

Ⅶ.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1. 적용대상 및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명	적용대상	요소별 반영비율		학년별 반영비율
			교과	비교과 (출결)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2025. 1. 졸업자 ~ 2027. 2. 졸업예정자	100%	-	없음
	논술【논술우수자전형】		100%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0%	30%	
정시	수능【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100%	-	

※ 교과성적 :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 정시모집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 비교과성적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2. 반영 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 지표

가. 지원자가 이수한 반영 교과군의 모든 과목을 반영함
나.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며, 이수학점(단위)를 적용함
다. 반영 교과영역 : 보통교과[공통교과, 선택교과(일반선택, 진로선택)]

교과(군)	교과목	점수산출 활용지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반영 교과에 따라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	석차등급 [이수학점(단위) 적용]

[*] 스포츠융합과학과 지원자에 한해 수학 교과를 반영하지 않음
[**] '한국사' 과목은 사회 교과에 포함하여 반영함
※ 교과점수 산출시 진로 선택은 성취도에 따른 등급을 적용함(A : 1등급, B : 2등급, C : 4등급)

3.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불가자 비교내신 처리방법

모집시기	전형명	비교내신 처리방법
수시	논술【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점수 활용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경기실적 점수 활용
정시	수능【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활용

Ⅷ.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1. 수능 활용지표

수능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활용지표	표준점수	표준점수	등급에 따른 변환점수	백분위에 따른 변환표준점수	등급에 따른 가산점

※ 영어영역 변환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점수	200	198	195	190	182	170	158	146	0

※ 탐구영역은 수능 백분위 발표 후 이를 활용하여 본교에서 자체 산출한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며,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반영하지 않음 (수능 성적 발표 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 예정)

2. 수능 활용영역 및 반영비율

□ 각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과 수험생이 응시한 수능 영역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반영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단, 스포츠융합과학과는 수학영역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

□ 수능【일반학생전형】, 수능【일반학생전형-스포츠융합과학과】, 수능【기회균형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반영 과목수
자연	자연계열[스포츠융합과학과 제외] , **자율전공학부(자연)**	20	35			20	25		-	2
	스포츠융합과학과	40	-			30	30		-	2
인문	인문계열[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제외], **자율전공학부(인문)**	30	25			20	25		-	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국제통상학부	30	30			20	20		-	2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변환표준점수(과목별 100점 기준)의 합계를 반영함

□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반영 과목수
자연	자연계열	20	35			20	25			2
인문	인문계열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제외]	30	25			20	25			2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국제통상학부	30	30			20	20			2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변환표준점수(과목별 100점 기준)의 합계를 반영함

3. 가산점

□ 수학영역은 표준점수, 과학탐구영역은 변환표준점수에 가산점 부여

전형명	모집단위	수학영역 가산점	탐구영역 가산점
		기하 또는 미적분 응시자	과학탐구 응시자
수능【일반학생전형】 수능【기회균형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자연계열 [정보융합학부, 스포츠융합과학과 제외] , **자율전공학부(자연)**	3%	3%

□ 한국사 가산점 : 전형 총점(1,000점 기준)에 부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산점	10	10	10	10	9.8	9.6	9.4	9.2	9.0

4. 수능 응시영역

전형명	응시영역	선택과목		비 고
수능【일반학생전형】 수능【기회균형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한국사	국어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자연/인문 전체 모집단위
		수학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	사회/과학탐구 17과목 중 2과목 선택	
수능【일반학생전형- 스포츠융합과학과】	국어, 영어, 탐구(사회/과학), 한국사	국어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스포츠 융합과학과
		탐구	사회/과학탐구 17과목 중 2과목 선택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직업), 한국사	국어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자연/인문 전체 모집단위
		수학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	사회/과학탐구 17과목 중 2과목 필수 선택 또는 직업탐구 6과목 중 2과목 필수 선택	

IX.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1. 학생부종합전형

대상전형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단계별전형	1단계 서류종합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하며, 2단계 면접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함
	일괄합산전형	서류종합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함

2. 학생부종합전형 외 전형

대상전형		반영방법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기타【재외국민전형】	(조치사항 1~7호) : 총점에서 최대 50점 ~ 최저 3점 감점 (조치사항 8~9호) : 부적격 처리
정시	수능【일반학생전형】 수능【일반학생전형 -스포츠융합과학과】 수능【기회균형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수시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조치사항 1~7호) : 총점에서 최대 100점 ~ 최저 5점 감점 (조치사항 8~9호) : 부적격 처리

※ 감점 적용기준은 전형총점(1,000점)에 적용함.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도 고교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